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6. 3. 27.(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6. 2. 25.

나. 제안자: 김용희 의원

다. 회부일자: 2026. 3. 6.

라. 상정일자: 제307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6년 3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용희 의원
- 검토보고: 김민석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문

-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이 수반됨. 현재 인천 시민들은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 타 지자체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과 절차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감내하도록 방치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함.
- 국회와 정부는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인천 시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전국 최대 수준의 언론 피해 구제 수요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중재부가 부재한 인천의 특수성과 불합리한 사법 서비스 불균형을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인천 언론중재위원회(중재부)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고 생활권 중심의 신속한 구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나. 제안이유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독립적인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인천 시민들은 언론 피해 발생 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중재부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로, 왕복 3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특히 교통이 불편한 시민,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려워 상당수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구제를 포기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경기중재부의 처리 사건은 413건으로 전국 최대치이며, 이 중 약 37%(154건)가 인천·부천·김포 지역 사건임. 이러한 업무 과부하로 인해 법정 처리 기한(14일) 준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피해 구제의 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인구 300만의 광역시이자 수도권 서부까지 포함 430만 시민의 거대 생활권인 우리 인천에 강원도와 제주도에도 설치된 언론중재부가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 사법·준사법 인프라는 행정 경계가 아닌 실제 시민의 생활권 단위로 설계되어야 함.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과 궤를 같이하여 인천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언론중재 기구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결의안의 취지 및 필요성

가. 언론중재위원회 제도 개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기구임.

나. 언론중재부 설치 현황

-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 본부와 전국 각지의 지부(중재부)를 두고 있으며, 조정·중재·제소 전 화해 등의 업무를 수행함.

[표 1]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운영 현황 (총 18개소)

(기준: 2026. 3월)

명칭	소재지	관할 지역
서울 제1~8중재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일원 및 경기도 일부 지역(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일원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일원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서울중재부 관할구역 제외) 일원
강원중재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일원
충북중재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일원
전북중재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경남중재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일원
제주중재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다. 제안 필요성

- 본 결의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허위·왜곡 보도에 따른 언론피해 구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천 시민이 수원 소재 언론중재위원회(경기중재부)를 이용해야 하는 데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에 독립된 언론중재기구 설치를 촉구하고자 발의된 것임.

□ 주요 검토의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은 언론 등의 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¹⁾,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역 관할 중재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언론피해 구제제도는 단순한 민원성 절차가 아니라 인권과 언론 자유의 균형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지역 주민이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처리의 신속성이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단, 서울중재부 관할구역 제외)을 관할하고 있어, 인천 지역 사건 역시 수원 소재 경기중재부를 이용하는 구조임.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조정)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인천 시민은 상담·조정기일 출석 등을 위해 수원으로 이동해야 하며, 특히 교통취약계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는 절차 이용 장벽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에는 지역중재부가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305만의 광역도시이자 다양한 언론환경을 가진 인천에는 독립된 중재부가 없어, 언론피해 권리구제 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아울러, 결의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중재부의 사건 처리 부담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기중재부는 서울중재부를 제외한 지역중재부 10곳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음.

[표 2] 중재부별 조정·중재 신청현황 (최근 4개년)

(기준: 2022년 ~ 2025년, 단위: 건)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제주
청구건수	11,368	1,055	529	468	405	374	316	279	200	135	94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정보자료실

- 인천경기기자협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경기중재부의 조정 처리 기간은 2022년 15일에서 → 2025년 27.3일로 늘어나 법정 기한 (14일 이내)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중재부 처리건수 중 수도권권 서부(인천·부천·김포) 청구 비중은 지난 4년 평균 36.9%이며 2025년에는 43.7%에 이르고 있음.

[표 3] 인천 언론중재 수요

구분	내용
인구 규모	약 300만 명(인천시 기준), 수도권 서부 생활권(인천·부천·김포) 430만 명
사건 수	2020년 경기중재부 처리 사건 413건 중 약 37%(154건)가 인천·부천·김포 비중
이동 거리	인천 → 수원 경기중재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접근성 문제	교통 불편 시민, 고령자, 장애인 등 실질적 접근 어려움

- 인천중재부 신설 시, 위와 같은 경기중재부의 업무 과부하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도권 서부(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급증하는 중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행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와 중재위원 정원을 규정³⁾하고, 구체적인 중재부의 구성과 관할은 「언론조정 중재규칙」으로 규정⁴⁾하고 있음.
- 현재 언론중재법에 정해진 중재위원 상한선인 90명이 18개 중재부(서울 8개소, 지방 10개소)에 각 5명씩 소속되어 있어, 인천 중재부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중재위원 상한선을 늘린 뒤, 위원회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이 촉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인천 시민의 언론 피해에 따른 신속한 구제와 공정한 조정을 위한 선행 과제로 판단됨.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하 생략)

4) 「언론조정중재규칙」

제4조(중재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종합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인천 시민이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타 지역(경기 중재부)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적 불편과 사법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권 중심의 언론분쟁 조정·중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인천·부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사건 비중, 인구 규모 및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면, 인천에 독립된 언론중재부를 설치할 충분한 수요와 타당성이 존재하며, 이는 강원·제주 등에 이미 중재부가 설치된 상황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음.
- 또한,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시민이 거주 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본 결의안은 인천 시민의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준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요구로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원안동의

- 인천 시민의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준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에 독립된 언론중재기구 설치를 촉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

가. 찬 성: 4명(유승분, 김대영, 김명주, 임춘원 의원)

나. 반 대: 0명

6. 심사결과: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7.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1부. 끝.

[붙임]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허위·왜곡 보도 증가로 시민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가치이지만, 그 자유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인천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수원 소재 경기중재부를 이용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 교통이 불편한 시민, 고령자, 장애인 등은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권리구제 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며, 사법서비스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인천은 수도권 서부 430만 시민의 생활권 중심지로서 언론 분쟁 발생 규모와 인구 특성을 고려할 때, 독립된 언론중재부 설치가 충분히 타당함. 강원도, 제주도에도 중재부가 설치된 상황에서 인천에만 부재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지역 불균형이라 할 수 있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 시민의 언론 피해 구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 있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인천광역시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

- 하나. 정부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인천의 인구 규모와 분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 단위의 독립 언론중재 인프라 구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하나.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하여 인천 시민의 언론 피해 구제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애 적극 협력하라!

- 하나.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라!

2026. 3.

인천광역시의회